

[붙임]

신구조문 대비표(260825)

변경 전	변경 후
1 조 생략 제 2 조 (목적)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상 집합투자업 1.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무 1. 국내외 경제, 산업, 기업 및 자본시장 등의 조사 분석, 가치평가에 관한 용역제공업 1. 기업경영 컨설팅 1.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1.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그 관련 증권의 취득·관리·처분 등 관련 업무 1. 상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1. 상기 각 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, 차입 1. 상기 각호와 관련되는 부수되는 업무 일체 <신 설> 부 칙 (2026.05.13) 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정비)	1 조 생략 제 2 조 (목적) ①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상 집합투자업 1.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무 1. 국내외 경제, 산업, 기업 및 자본시장 등의 조사 분석, 가치평가에 관한 용역제공업 1. 기업경영 컨설팅 1.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1.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또는 그 관련 증권의 취득·관리·처분 등 관련 업무 1. 상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1. 상기 각 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조달, 차입 1. 상기 각호와 관련되는 부수되는 업무 일체 <u>1.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한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업무</u> <u>1.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서 허용하는 업무</u> <u>1.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</u> <u>1. 각호 관련 투자 및 부수되는 업무 일체</u> 부 칙 (2026.05.13) 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정비) 부 칙 (2026.08.25) 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 년 8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 2 조 (목적) 중 <u>1.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규정</u>

<신 설>

한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업무

1.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
서 허용하는 업무

이 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겸
영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

(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관련 사업
목적의 정비 등)